

#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중요성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형적인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무형적인 재산권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기술, 문화적인 개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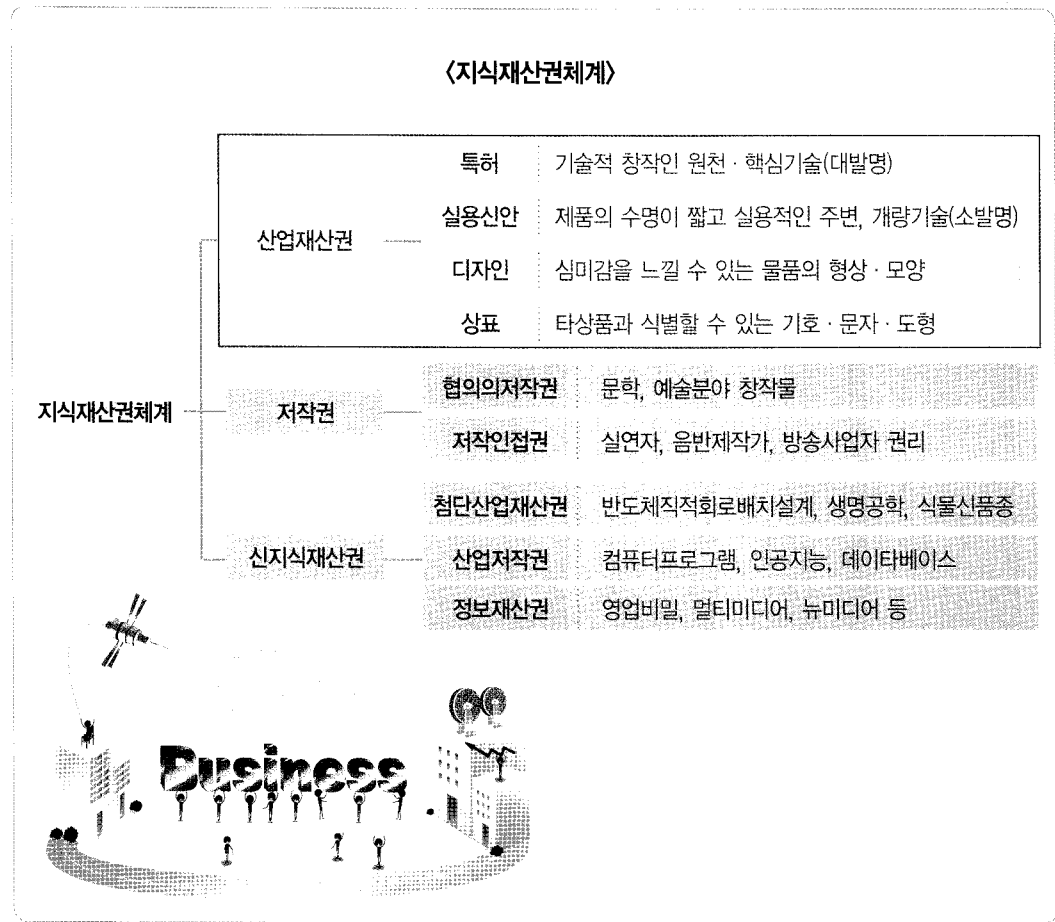
자료\_ 특허청·정리\_ 편집부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인류문명은 일반적으로 원시수렵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진입한 제1의 혁명,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한 제2의 혁명,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화(IT) 사회로 진입한 제3의 혁명, 생명공학(BT)의 발달을 가져온 제4의 혁명, 나노기술(NT)이 등장한 제5의 혁명으로 구분되며,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에릭 드랙슬러는 “단백질과 세포 크기만한 기계가 산업혁명, 항생제,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이는 나노, 바이오, IT의 융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인류문명을 지속시키고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제도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주요지표로 삼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의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방법을 몰라 권리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도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권리화를 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관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지식재산권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가 강하다는 것은 기술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경쟁력도 강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가 강한 나라들은 결국 산업의 경쟁력도 강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날이 갈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과거 Anti-Patent 정책을 펼친적이 있지만 산업경쟁력의 저하와 산업공동화 현상의 발생으로 그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강한 미국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그 주요방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Pro-Patent 정책을 명확히 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특허관련 출원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Pro-Patent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은 유럽공동체특허를 제정·운영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고,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돌파구를 지식재산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창설, 지적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우리나라의 기술현황과 지식재산권

우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면 세계시장 1위 품목은 전체 3,500품목에서 55개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669개), 미국(618개), 일본(354개), 중국(306개), 대만(206개)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품목을 보면 섬유, 세탁기, 피아노, 낚싯대, 헤어핀, 메모리 D램, LCD 등에 불과하여 기술중심의 경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국제정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청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범정부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미진하고 저작권, 신식식재산권 등 관련법령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일된 기구나 조직이 없어 총력을 기울이기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 —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 및 대응방안

지금의 특허전쟁 시대에서는 기술의 생명주기(life-cycle)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특허제도도 이와 같은 산업발전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추세에 맞도록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관련 법제를 보완하여 기술혁신에 방해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갖추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국가 R&D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핵심 및 원천기술 개발확대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원천특허 또는 개량특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원 또는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규범의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해외 특허권 취득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기업 내 특허전담부서의 강화와 특허매입 등 기업자체의 특허분쟁 대응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종합조정,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정책을 총괄기획,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지원 강화 및 대기업 특허의 이전 활성화, 공공연구소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관련 금융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벤처지적재산권 위험관리 지원제도

□ 벤처지적재산권 지원제도란?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벤처기업에게 위험관리 컨설팅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여주고, 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전 세계 소송 건에 대해 소송비용 및 판결금액을 보상받도록 지원함.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 컨설팅비용 전액(500만 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유기증권의 인수를 업무로 하는 금융업자, 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업자

○ 지원내용 : 신청기업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인 해외재보험자의 Underwriter가 제반 지적재산권 침해/피침해 위험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험 인수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부적합할 시 그 사유를 지적하여 기업의 지적재산권 위험여부를 판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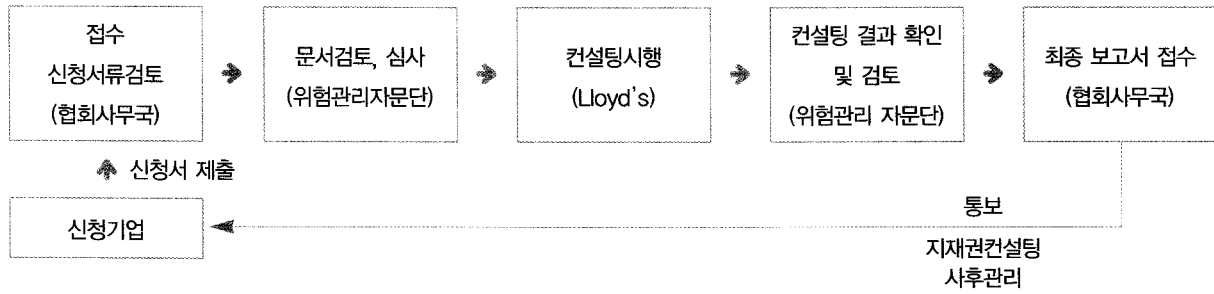
□ 신청·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대상 : 벤처기업확인('97년 이후)을 1회 이상 받은 벤처기업

○ 신청·접수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 상 벤처지재권 컨설팅지원 배너클릭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벤처확인증, 지재권 사본을 구비하여 팩스송부

□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 2009. 1. 1 ~ 12. 31(연중 수시접수)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 벤처기업협회 벤처지적재산권 지원제도 담당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구로디지털 1단지) 마리오타워 8층

○ TEL : 02-8900-631

FAX : 02-8900-640

E-MAIL : jwmoon@kova.or.kr

